

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동의서 검인 신청시 구비 서류

□ 관련 근거

-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의2(주민대표단의 구성·승인 등), 제18조의3(주민대표단의 기능)
-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1조의2(주민대표단의 구성·승인 등), 제21조의3(주민대표단의 업무), 제21조의5(동의서의 검인방법 등)

□ 구비 서류

- 주민대표단 구성동의서 검인 신청 문서
- 주민대표단 구성동의서 검인신청 관련 규정(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4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, 제21조의5 등)
- 주민대표단 대표, 감사 및 단원의 주소·성명(구성원 단지별 안배 표시)
- 주민대표단 구성원 등기
- 주민대표단 업무
- 주민대표단 운영규정(안)
-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서(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」)

□ 유의 사항

- 주민대표단 명칭은 “**둔산/송촌○○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**” 으로 통일하여 표기
- 주민대표단 구성원 중 등기 상 **공유지분자**가 있는 경우 **대리인 지정서 및 인감 또는 신분증 사본 첨부** 제출
-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리(한국토지주택공사, 첨부 파일) 등 관련 법령 및 자료를 참고하여 구비 서류 준비 필요. 끝.